

6.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7-다장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

제7다.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그러한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및 투자 활동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공동의 목적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부속서 7다-가의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정의된 범주에 해당하고 그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국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5.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의 최저임금 및 단체임금협약에 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노동 또는 사회 보장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7. 당사국은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체류가 다음을 방해하거나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인에 대하여 입국 및 일시체류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노동 분쟁 또는 협상의 결과, 또는

나. 그러한 분쟁 또는 협상에 관련된 자연인의 고용

제7다.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다음의 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른 영국 시민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 자연인의 입국과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7다.3조 정보의 제공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7다-가의 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그러한 범주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체류와 관련이 있는 관련 조치 및 유효한 조치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출입국 절차의 범주

나. 요구되는 서류 및 충족되어야 할 조건

다. 출입국 절차를 거치기 위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영사관 또는 온라인과 같은 제출처에 대한 선택지

라.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신청 수수료

마. 출입국 절차의 각 범주에 따른 최장 체류 기간

바. 출입국 절차의 이용 가능한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조건

사. 동반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

아. 이용 가능한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절차, 그리고

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관련 법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자국 영역에서의 취업 허가에 대한 효과적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건이나 절차의 도입, 또는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변경을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제7다.4조

신청절차

1. 각 당사국은 출입국 절차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재량에 따라, 출입국 절차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문서가 수집되는 목적에 상응할 것

나. 출입국 절차의 허용을 위하여 완료된 신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고 결정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하게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할 것

1) 신청이 승인될 경우, 체류 기간 및 실행 가능할 경우 그 밖의 관련 조건, 또는

2) 신청이 거부될 경우, 모든 이용 가능한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

3. 각 당사국은 전자적 형식의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7다.5조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자국의 약속을 부속서 7다-가의 자국의 양허표에 규정하며, 그 약속은 그 당사국이 명시한 기업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과 제한을 명시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그 기업인에게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허용 당사국의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입국 또는 허용 당사국에서의 일시 체류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4. 부속서 7다-가의 한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입국 및 일시체류에 관한 약속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은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전체 또는 명시된 범주에서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의 총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7다.6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4장(분쟁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4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다.7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의 거부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의 거부에 관하여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소진했을 경우

2. 다른 쪽 당사국이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구제 절차가 개시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소진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7다-가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구체적 약속 양허표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1. 이 양허표의 목적상,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¹

2. 이 양허는 영국의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제7다.5조에 따른 한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영국의 상용 방문자

3. **영국의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영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인

- 1) 부록 7다-가.1에 규정된 영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인, 또는
- 2)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제5항에 정의된 임원 또는 관리자이고 한국 영역에 기업, 지점, 대표사무소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입국 및 일시 체류하려는 인, 그리고

나. 제안된 영업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 주된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인

4. 영국의 상용 방문자에 대하여, 고용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¹ 기업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그 당사국 내 기업의 관련 상황에 대한 사안별 종합 검토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않고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체류가 허용된다.

영국의 기업 내 전근자

5. **영국의 기업 내 전근자**란 영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그 기업의 대표사무소,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한국 영역의 단체로 파견되었던 영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기업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서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기업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임원은 그 기업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란 주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업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체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기업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기업 내의 기업인을 말한다.

6. 영국의 기업 내 전근자에 대하여,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영국의 대졸연수생

7. **영국의 대졸연수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영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영국 기업의 피고용인인 인

나. 입국 및 일시 체류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

다. 학사학위를 보유한 인, 그리고

라. 경력개발 목적을 위해서나 사업 기술 또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사무소,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인 한국 영역의 단체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인²

8. 영국의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부록 7다-가.4에 규정된 분야에서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영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9. **영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영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부록 7다-가.2에 규정된 직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인

나.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및 직업적 자격요건과 직업적 자격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인

다.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한 영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인.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

² 대졸연수생을 받는 단체는 체류의 목적이 학사학위 수준에 상응하는 연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체류기간 동안의 연수계획서를 사전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다.

라.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영국 기업의 피고용인이었던 인, 그리고

마.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 인

10. 부록 7다-가.2에 규정된 직업의 영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영국의 기업인에 대하여,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영국의 독립전문가

11. 영국의 독립전문가란 다음에 해당하는 영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보유한 인

나. 그 전문가가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취득한 경우,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영 서비스 공급자.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그리고

다. 서비스가 공급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인

12. 부록 7다-가.3에 규정된 직업의 영국의 독립전문가로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영국의 기업인에 대하여,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가. 영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 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의 보유를 입증하는 문서

영국의 무역업자 및 투자자

13.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을 하려는 영국의 기업인에 대하여,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가. 주로 한국과 영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 나. 그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14. 이러한 약속의 목적상,

- 가. 배우자란 법적 배우자를 말한다. 그리고

- 나. 부양가족이란 한국의 관련 법에 따라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미혼의 법적 자녀를 말한다.

15. 이 장에 따라 입국 및 일시 체류의 자격을 갖춘 영국의 기업 내 전근자, 무역업자 또는 투자자, 영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영국의 독립전문가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취업허가는 한국의 관련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부록 7다-가.1

한국 양허표의 제3항가호1목에 언급된 영업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연구 및 설계

독립 연구 또는 영국 기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조 및 생산

영국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구매 및 생산 관리 인력

회의 및 협의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영국의 기업인

마케팅

독립 연구 또는 분석, 또는 영국 기업을 위한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 컨벤션에 참석하는 무역박람회 및 홍보 인력

판매

영국 기업을 위하여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판매 담당자 및 대리인

영국 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행하는 구매자

판매 후 또는 임대 후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영국 기업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 또는 임대 후 부수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설치자, 수리 및 유지보수 담당자 및 감독자

유통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의 원활화와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통관 중개인

일반 서비스

영국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영국의 관리 및 감독 인력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영국의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영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영국의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사 대행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행업자)

요리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 협의하는 영국의 조리사 인력

영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영국의 번역가 또는 통역가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영국의 정보 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한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영국의 가맹점 거래자 및 개발업자

부록 7다-가.2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5	정보통신 컨설턴트	
6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수량쿼터 적용대상
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8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9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0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1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	세라믹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5	송전·배전 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6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17	전기안전 기술자 및 연구원	
18	전자제품개발 전문가	
19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	전자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21	전자의료기기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22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25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2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7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9	섬유소재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0	섬유공정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1	염색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2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33	건축시공 기술자	
34	토목시공 기술자	
35	생물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6	생화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7	환경 컨설턴트	
38	가스·에너지 산업에 한정된 광업 기술자 및 연구원	
39	가스·에너지 산업에 한정된 지질학 기술자 및 연구원	
40	법률 자문을 제외한 일반 관리 컨설턴트, 재무 관리 컨설턴트,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생산 관리 컨설턴트	
41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4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4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44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45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수량쿼터 적용대상
46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수량쿼터 적용대상
47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수량쿼터 적용대상
48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49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50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5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52	컴퓨터 보안 전문가	
53	웹 기획자	
54	멀티미디어 기획자	
55	웹마스터	
56	화장품 및 비누제품 전문가	
57	전기제품 개발 전문가	
58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59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60	번역가 및 통역가	수량쿼터 적용대상
61	컴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 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수량쿼터 적용대상
62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63	인테리어 디자이너	수량쿼터 적용대상
64	조리사	수량쿼터 적용대상
65	호텔 및 관광 업체 관리자	수량쿼터 적용대상
66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	
67	외국법자문사(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68	건축가 ¹	
69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	
70	회계사	
71	회계 감사관	
72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73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74	시장 및 여론 조사 관리자	
75	산림 감독관	
76	도시 및 토지 이용 계획가	
77	조경사	
78	화학자	
79	물리학자	
80	지구과학자	
81	농경토양학자	
82	원예학자	

¹ 건축 서비스는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협업을 조건으로 한다.

부록 7다-가.3
독립전문가 목록

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5	정보통신 컨설턴트	
6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수량쿼터 적용대상
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8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9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0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1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	세라믹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5	송전·배전 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6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17	전기안전 기술자 및 연구원	
18	전자제품개발 전문가	
19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	전자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21	전자의료기기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22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25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2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7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9	섬유소재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0	섬유공정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1	염색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2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33	건축시공 기술자	
34	토목시공 기술자	
35	생물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6	생화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7	가스·에너지 산업에 한정된 광업 기술자 및 연구원	
38	가스·에너지 산업에 한정된 지질학 기술자 및 연구원	
39	법률 자문을 제외한 일반 관리 컨설턴트, 재무 관리 컨설턴트,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생산 관리 컨설턴트	
40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41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42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43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44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수량쿼터 적용대상
4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수량쿼터 적용대상
46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수량쿼터 적용대상
47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48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49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50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51	컴퓨터 보안 전문가	
52	웹 기획자	
53	멀티미디어 기획자	
54	웹마스터	
55	화장품 및 비누제품 전문가	
56	전기제품 개발 전문가	
57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58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수량쿼터 적용대상
59	번역가 및 통역가	수량쿼터 적용대상
60	컴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 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수량쿼터 적용대상
61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62	인테리어 디자이너	수량쿼터 적용대상
63	조리사	수량쿼터 적용대상
64	호텔 및 관광 업체 관리자	수량쿼터 적용대상
65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	
66	외국법자문사(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	

	에 관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67	건축가 ¹	

¹ 건축 서비스는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협업을 조건으로 한다.

부록 7다-가.4
대졸연수생에 대한 분야 목록

1. CPC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o. 77, 1991년 발간 CPC Prov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2. "*" CPC 코드 번호 위의 이중 별표는 이 부록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3. 이 부록에 기재된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I. 서비스 분야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d.	건축 설계 서비스	(CPC 8671)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e.	기타	(CPC 845, 849)	
C. 연구 개발 서비스			
b.	사회·인문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2)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83105** :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d.	프로젝트 경영 및 그 밖의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e.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2**)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은 제외)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함.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 서비스는 제외함.
l.	조사 및 경비 서비스	(CPC 873)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및 조사 서비스	(CPC 86752)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q.	포장 서비스	(CPC 876)	
r.	1) 인쇄	(CPC 88442**)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2)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s.	국제회의 서비스	(CPC 87909**)	
	속기 서비스	(CPC 87909**)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u>통신 관련 서비스</u>			
a.	장비임대 서비스	(CPC 7541)	
b.	통신단말장비의 도·소매 서비스	(CPC 7542**)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4. 유통 서비스			
<u>D. 프랜차이즈</u>		(CPC 8929**)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CPC 61111,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 소 사업 제외), 622** (62211 중 곡물, 62223 및 홍삼 제외), 631** (담배, 쌀 및 홍삼 제외), 632에 포함 되는 품목에 한정 됨.
6. 환경 서비스		
<u>D. 기타</u>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시험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 평가 서비스만 해 당함.
	토양 및 지하수 정화	(CPC 9406**)
	환경 컨설팅 서비스	(CPC 9409**)
7. 금융 서비스		
<u>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		
<u>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u>		
10.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		
	<u>E. 레크리에이션 파크 서비스</u>	(CPC 96491**, 다 만, CPC 96191, 96192 및 해변 서 비스 제외)
11. 운송 서비스		
<u>A. 해운 서비스</u>		
<u>해운 부수 서비스</u>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통관서비스	
	해운대리업서비스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해상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 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해운 중개 서비스	(CPC 748**, 749*)	CPC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 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용대선, 대여,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 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예선 서비스	(CPC 7214)	
	검수, 검정, 검량 서비스	(CPC 745**)	검수, 검정, 검량 서비스는 해상운송 분야에만 적용됨.
<u>C. 항공운송 서비스</u>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이 서비스는 포괄 임차에 한정됨.
	지상조업 서비스		
<u>E. 철도운송 서비스</u>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d.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u>F. 도로운송 서비스</u>			
b.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	(CPC 71223)	

c.	도로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7의 일부, CPC 6112의 일부)	
<u>G. 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됨.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 – 가스 산업”에 기재됨.
<u>H. 모든 형태의 운송 부수 서비스</u>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	(CPC 742**)	농·축·수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u>I. 그 밖의 운송 서비스</u>			
<u>복합 운송 서비스</u>			
	철도화물 주선		“철도화물 주선”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 화물 적재/하역 및 배달 등을 포함하는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부수 서비스를 말함.
II. 비서비스 분야			
A. 농업, 수렵업, 임업			
b	임업 및 벌목업	(ISIC 개정판 3.1: 02)	
B. 광업 및 채석업			
a	석탄 및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	(ISIC 개정판 3.1: 10)	
b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탐사를 제외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수반된 서비스 활동	(ISIC 개정판 3.1: 11)	

d	금속 광업	(ISIC 개정판 3.1: 13)	
e	그 밖의 광업 및 채석업	(ISIC 개정판 3.1: 14)	
C. 제조업			
a	음식료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5)	곡물도정은 제외함.
b	담배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6)	
c	직물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7)	
d	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	(ISIC 개정판 3.1: 18)	
e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9)	
f	가구를 제외한 목재와 목제품 및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품 및 조물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0)	
g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1)	
h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은 제외함.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 서비스 중 그 밖의 사업 서비스에 기재됨.
i	코르크스 제조로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1)	
j	석유 정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2)	
l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a)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1)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업은 제외함.
	b)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2)	
	c) 합성섬유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3)	
m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5)	
n	그 밖의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6)	

o	1차 금속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7)	
p	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8)	원자로 제조업은 제외함.
q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및 장비 제조업		
	a) 일반 목적의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 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9)	
	c)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r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s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t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u	의료·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SIC rev 3.1: 33)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업은 제외함.
v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w	그 밖의(비군사용) 운송 장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그 밖의 군사용 운송장비의 제조는 제외함.
x	가구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	
y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D.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a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		
	a)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ISIC 개정판 3.1: 401)	
	b) 가스 제조, 가스 배관을 통한 가스 연료 공급	(ISIC 개정판 3.1: 402)	
	c) 증기 및 온수 공급	(ISIC 개정판 3.1: 403)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체류에 관한 영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1. 이 양허표는 제 7 다.5 조에 따라 한국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영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이 양허표의 목적상,

CPC 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를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이란 한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¹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기간 포함)
가) 상용 방문자 영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범주에 따라 약속한다. 가. 설립 목적의 상용 방문자, 그리고 나. 단기 상용 방문자	
<u>정의:</u> 설립 목적의 상용 방문자란 비영리조직 외의 한국의 기업에 의하여 고위직에 고용된 다음에 해	영국은 다음과 같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한다. 가. 12개월의 기간 중 90일을

¹ 기업이 한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한국 내 기업의 관련 상황에 대한 사안별 종합 검토에 따라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영국에 그 기업의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지점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 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상품 판매, 서비스 공급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제활동에도 종사하지 않는 자, 그리고 다. 영국 내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일 것, 그리고 나. 취업 허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의도를 가지는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
<u>정의:</u> 단기 상용 방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일시 체류 동안 아래에 기재된 허용된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일반 대중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 자 다. 아래 사에서 허용된 활동을 제외하고,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라. 영국 내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 단기 상용 방문자가 일시 체류 동안 종사할 수	영국은 다음과 같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한다. 가. 12개월의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일 것, 그리고 나. 취업 허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의도를 가지는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의: 회의 또는 컨퍼런스 참석
- 나.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사업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무역 박람회 또는 전시회 참석
- 다.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판매를 협상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리인(그 자체로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 라. 구매: 기업을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 마. 상업적 거래: 한국의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관리자, 감독자 또는 금융 서비스 전문가(보험업자, 은행가 또는 투자 중개인을 포함한다)
- 바. 연수 세미나: 영국 내 기관이 활용하는 기술 및 업무 관행에 관하여 관찰, 친숙화 및 교실수업의 형태로 연수를 받는 기업의 피고용인
- 사. 판매 후 또는 임차 후 서비스: 한국 기업에 의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 또는 기계(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의 판매 또는 임차에 부수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설치자, 수리 또는 유지보수 전문가 또는 그들의 감독자 아. 연구 및 설계: 독립적인 연구 또는 한국 기업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또는 통계 연구원 자. 시장 조사: 한국 기업을 위하여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마케팅 연구원 또는 분석가, 또는 차. 관광업: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한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에 동반하는 관광 또는 여행사 대행인, 관광 가이드 또는 여행업자	
--	--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기간 포함)
나) 기업 내 전근자 영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범주에 따라 약속한다. 가. 관리자 나. 전문가, 그리고	

다. 대졸연수생

관리자 또는 전문가와 동반하는 동거인 및 부양 자녀

1. 이러한 약속의 목적상, **부양 자녀**란 기업 내 전근자에게 의존하고 영국의 법에 따라 부양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말한다.
2. 기업 내 전근자가 관리자 또는 전문가 범주에 속할 경우 영국은,
 - 가.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와 동반한 영국의 관련 출입국 규정에 정의된 동거인 및 부양 자녀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그 기업 내 전근자에게 허용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허용한다.
그리고
 - 나. 취업 허가를 요구함이 없이, 신청에 따라 그 기업 내 전근자의 동거인 또는 부양 자녀에게 체류 기간 동안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의 자격으로 근무하도록 허가를 부여한다.

정의:

기업 내 전근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 가. 입국 및 일시 체류 신청의 제출일 직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비영리조직 외의 한국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그 기업의 공동경영자인 자
- 나. 가호에 언급된 기업(그 기업의 대표사무소, 자회사, 지점 또는 본사를 포함한다)

영국은 다음과 같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한다.

- 가. 관리자 및 전문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일 것, 영국의 재량으로 1년까지 연장 가능함. 그리고
- 나. 대졸연수생: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일 것

과 동일한 기업체 내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영국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 그리고 다.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 1)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근무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로 기업 또는 기업 부서의 경영을 지휘하는 자 (나) 채용 및 해고하거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자, 그리고 (다) 주로 이사회, 주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는 자 2) 전문가란 기업의 생산, 연구 장비, 기술, 처리, 절차 또는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한 전문가 수준의 특화된 지식을 보유한 고도의 자격을 갖춘 기업인을 말한다. 또는	
---	--

3) 대졸연수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학사 학위를 보유한 자 (나) 경력개발 목적을 위해서 나 사업 기술 또는 방법 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 하여 업무 경험 프로그램 의 일부로서 영국에 일시 적으로 파견된 자, 그리고 (다) 파견 기간 동안 가호에 언급된 기업에 의하여 급 여를 받는 자	
--	--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 포함)
다) 계약 서비스 공급자	
<u>정의:</u> 계약 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에 고용된 자 1) 직업 소개 및 인력 공급 서비스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해야 한다. 영국의 약속은 다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수량쿼터의 형태로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

대리업이 아니며 그러한 대리업을 통하여 활동하지 않는 기업	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조건으로 한다.
2) 영국의 영역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 그리고	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 672 및 8673)
3) 영국 내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선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 또는
(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공적 또는 공인 활동은 제외함)
(나)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의 영역 내에 피고용인의 일시 주재를 요구하는 계약, 그리고	허용되는 입국 및 일시 체류는 24개월의 기간 중 누적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 영국의 법을 준수하는 계약	허용되는 입국 및 일시 체류는 그 계약의 대상인 서비스 활동에만 관련되며 영국의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나. 학사 학위나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입증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²	영국은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의 수에 관하여만 약속한다.
다.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제출일에,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활동에서 성인 연령에 도달한 후 취득한 최소 3년의 직업적 경험을 보유한 자	

² 그 학위 또는 자격이 영국 내에서 취득되지 않았을 경우, 영국은 그것이 자국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사 학위와 동등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라.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영국 법이 요구하는 직업적 자격 요건을 보유한 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국은 제7다.5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자격요건, 자격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또는 면허절차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면허 취득, 규제되는 분야에서의 자격인정 획득 또는 특정한 시험 통과 요건을 포함하는 그러한 조치는 비록 이 양허표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계약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마.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제출일 직전 최소 12개월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 그리고	
바.	영국 내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	
	영국은 다음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한정하여 약속한다.	
가.	국제 공법 및 외국 법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CPC 861의 일부)	
나.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감사 서비스’ 외의 CPC 86212, 86213, 86219 및 86220)	
다.	세무 서비스(CPC 863, 자문 서비스에 한정함) ³	
라.	건축설계 서비스 및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1 및 8674)	
마.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및 8673)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는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	
사.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심리학 서비스(85201의 일부)를 제외한 852 및 853]	
아.	광고 서비스(CPC 871)	
자.	경영컨설팅 서비스(CPC 865)	
차.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CPC 866)	
카.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타.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공적 또는 공인 활동은 제외함)	
파.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CPC 751,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하.	통신 서비스(CPC 7544,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거.	현장 조사 작업(CPC 5111)	
너.	환경 서비스(CPC 9401, 9402, 9403, 9404, 9405, 9406의 일부 및 9409)	
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러.	기타 금융 서비스 ⁴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머.	선박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868의 일부)	
버.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 운송 장비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의 일부 및 8868의 일부)	
서.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33, 7545, 8861, 8862, 8864, 8865 및 8866), 그리고	
어.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 및 885,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 포함)
라) 독립전문가	
<u>정의:</u> 독립전문가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독립전문가는 한국에 설립된 자영업자로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해야 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한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고 자영업자로 설립된 자	영국의 약속은 다음 분야 또는 하 위 분야에서 수량쿼터의 형태로 독 립전문가의 수에 대한 제한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조건으로 한 다.
나. 영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않은 자	
다. 영국 내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선의의 계 약(직업 소개 및 인력 공급 서비스 대리 업을 통한 것은 제외함)을 체결한 자	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 672 및 8673)
1)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 C 84), 또는
2)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 의 영역 내에 일시 주재를 요구하 는 계약, 그리고	다.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공적 또는 공인 활 동은 제외함)
3) 영국의 법을 준수하는 계약	허용되는 입국 및 일시 체류는 24 개월의 기간 중 누적하여 12개월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계약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으로 한 다.
라. 학사 학위나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입증 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 ⁵	허용되는 입국 및 일시 체류는 그 계약의 대상인 서비스 활동에만 관 련되며 영국의 전문직 직함을 사용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마.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영국 법이 요구하는 직업적 자격 요건을 보유한 자, 그리고	
바.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제출일 에,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활 동에서 최소 6년의 직업적 경험을 보유한 자	

⁵ 그 학위 또는 자격이 영국 내에서 취득되지 않았을 경우, 영국은 그것이 자국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학사 학위와 동등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은 다음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한정하여 약속한다. 가. 국제 공법 및 외국 법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CPC 861의 일부) 나. 건축설계 서비스 및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1 및 8674) 다.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심리학 서비스(85201의 일부)를 제외한 852 및 853]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및 8673) 마. 경영컨설팅 서비스(CPC 865) 바.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CPC 866) 사. 통역 및 번역 서비스(CPC 87905, 공적 또는 공인 활동은 제외함) 아. 통신 서비스(CPC 7544,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자.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CPC 751,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차.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국은 제7다.5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자격요건, 자격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또는 면허절차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면허 취득, 규제되는 분야에서의 자격인정 획득 또는 특정한 시험 통과 요건을 포함하는 그러한 조치는 비록 이 양허표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독립전문가에게 적용된다.
---	--

카.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타. 기타 금융 서비스⁶(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그리고 파.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 및 885,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한정함)	
--	--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 포함)
마) 투자자	
<u>정의:</u> 투자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의하여 고위직에 고용되고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제출일 직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의 피고용인이었던 자 나. 영국에 그 기업의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 중인 자 다.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 그 밖의 감독	한국의 기업은 투자자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제출일에 최소 3년간 거래했어야 한다.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은 기업이 투자한 자본의 양보다는 경제와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다. 영국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회사나 지점,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영국 내 기업의 운영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될 자, 그리고 라. 주로 그 기업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의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될 자	
--	--